

Deloitte.

# 세무관세뉴스

2024년6월



# 주목할 만한 사항:

## 세무관리

- 출국 정지 통보가 세무총국/지방 세무국의 웹사이트에 게시됨
- 세무총국은 체납 세금 회수 강화함

## 법인소득세 ("CIT")

- 분기 투자와 업종, 활동 추가의 경우에 대한 CIT 인센티브
- 여러 가지 법인세 세금 혜택을 받는 기업
- 지역 조건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가공 활동에 대한 법인세 세금 혜택
- 투자 프로젝트가 기존 프로젝트의 위치, 자산 및 사업 활동을 승계하는 경우 결정
- 재생 에너지 인증서 ("REC") 양도
- 투자 프로젝트가 기존 프로젝트의 위치, 자산 및 사업 활동을 승계하는 경우 결정
- 운송비 지원에 대한 세금 정책
- 이자 비용은 EBITDA가 음수인 경우 공제되지 않음

## 간접세 ("VAT")

-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전기 및 수도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 발행
- VAT 면세 및 비면세 대상 서비스가 함께 포함된 인보이스 발행

## 이전가격 ("TP")

- 대출이자에 대한 세금정책

## 개인소득세 ("PIT")

- 전화비 수당에 대한 PIT 계산기준
- 퇴직 수당에 대한 PIT 계산 근거
- 대표 사무소의 출장비에 대한 PIT 계산 기준
- 의무적인 사회보험료와 상당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 계산 근거
- 세무자문 서비스 수수료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수당에 대한 세금 계산 근거
- 위임에 따라 부동산 증여에 대한 PIT 과세

##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베트남 회사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외국 공급업체와 계약할 때의 FCWT 신고 의무
-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 서비스는 FCWT 과세 대상이 아님

## 무역 및 관세

- 외국 자본 투자 기업의 재고 처리활동에 대한 지침
- EPE의 내국 기업을 위한 수출 가공 활동에 대한 지침
- 위험 분류 품목 목록 발행
- EPE의 내부 소비를 위한 공구, 기구 생산에 대한 수입 품목 확정 보고서 제출 제안
-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온실가스 관리 및 제거를 위한 국가 계획 발표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 세무관리 지침 문서

### 출국 정지 통보가 세무총국/지방 세무국의 웹사이트에 게시됨

납세자가 정보를 조회하기 쉽게 하기 위해, 국무총국은 지방 세무국과 대기업 관리 세무국을 대상으로 모든 출국 정지 통보, 출국 정지 연장 통보, 출국 정지 취소 통보를 지방 세무서의 웹사이트에 완전히 게시하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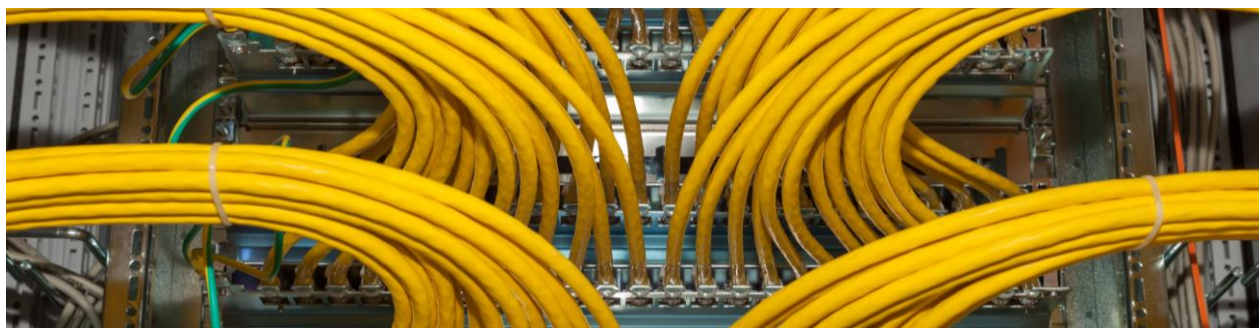
(세무총국의 2024년 6월 10일 제2477/TCT-QLN호 OL)

### 세무총국은 체납 세금 회수 강화함

세무총국은 국고로의 체납 세금 회수를 강화하고 새로운 체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앙직할시 및 성 등의 지방세무국 및 대기업 관리 세무국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 법인 대표인 개인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등록된 주소지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납세자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세금과 기타 국가 예산 관련 부채를 지닌 납세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 세금 체납을 예방하고 소액 체납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납세자에게 세금의무 (체납 금액 포함)를 알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다. 또한, 세무총국의 전자 포털이나 E-ta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납부를 권장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6월 6일 제2403/TCT-QLN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 분기 투자와 업종, 활동 추가의 경우에 대한 CIT 인센티브

하이퐁시 세무서의 제2133/TCT-CS호 OL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회사의 프로젝트가 분기 투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분기 투자에 관한 규정 (법령 제91/2014/NĐ-CP 제1조 제7항 및 훈령 제 96/2015/TT-BTC 제 10 조 제3항)에 따라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 운영 과정에서 회사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상업적 성격의 사업 활동을 추가하더라도 자본을 늘리지 않거나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확장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업종 및 활동 추가로 인한 수익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세무총국의 2024년 5월 20일 제2133/TCT-CS호 OL)

### 여러 가지 법인세 세금 혜택을 받는 기업

CIT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기업은 여러 가지 혜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가장 유리한 혜택 조건 (지원 산업 제품 ("SI") 생산)에 따라 세금 혜택을 선택하는 경우:

- SI 제품 생산 프로젝트는 산업 지원 조건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산업무역부의 혜택 확인서를 받은 시점부터 적용된다.
- SI 제품이 아닌 제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에 따라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없다.

(세무총국의 2024년 6월 3일 제2326/TCT-CS호 OL, 2024년 6월 3일)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 지역 조건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가공 활동에 대한 법인세 세금 혜택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예: 제품 A의 생산) 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 제품 A의 가공) 그 제품(제품 A)의 가공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은 혜택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가공 활동이 현재 받는 세금 혜택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세금 혜택은 제품 A의 생산 활동에 대한 현재 세금 혜택과 동일한 혜택이 남은 기간 동안 적용된다.

(하이퐁시 세무국의 2024년 5월 21일 제1894/CTHPH-TTHT호 OL)

### 투자 프로젝트가 기존 프로젝트의 위치, 자산 및 사업 활동을 승계하는 경우 결정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투자 허가서를 받았지만, 이 투자 프로젝트가 기존 프로젝트의 자산, 사업 위치, 사업 분야, 사용된 기계 및 장비를 승계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 프로젝트는 세법에 따라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는다.

(세무총국의 2024년 6월 3일 제2327/TCT-CS호 OL)

### 재생 에너지 인증서 (“REC”) 양도

REC 인증서의 양도와 관련하여:

- CIT 측면에서: 회사가 수력 발전소 건설,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조건에 따라 CIT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REC 인증서의 양도로 발생한 수익이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수익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VAT 측면에서:
  - 기업이 REC 인증서를 양도할 때, 제 44/2023/NĐ-CP호 시행령의 목록 I, II, III에 명시된 물품 및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양도가 법적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제44/2023/NĐ-CP호 시행령에 따라 VAT 감면 대상이 된다.
  - REC 증서의 해외 이전 경우에는 기업의 서류와 자료 및 수출품에 대한 0% 세율 적용 조건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실행 여부를 검토하거나, 문제 발생 시 권한 있는 기관에 해결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하이퐁시 세무국의 2024년 5월 20일 제2127/TCT-CS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 운송비 지원에 대한 세금 정책

회사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운송비 지원을 수행하는 경우:

- VAT 측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구매자는 VAT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회사에 발행하고, VAT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CIT 측면에서: 운송비 지원금은 양측이 채무 상계 문서를 작성하여 매입 상품의 가치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계약서/계약 부록에 명시되고, 양측 간 운송비 지원 비용 확인서와 목록이 있고 96/2015/TT-BTC 호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CIT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계산된다.

(해노이시 세무국의 2024년 5월 17일 제28812/CTHN-TTHT호 OL)

### 이자 비용은 EBITDA가 음수인 경우 공제되지 않음

영업활동으로 인한 총 이익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과 대출 이자를 차감한 후,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더하여 EBITDA가 음수인 경우:

- 이자 비용은 법인세 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 비용은 제132/2020/ND-CP호 시행령 제16조 제3항 b점에 따라 다음 과세 기간으로 이월될 수 있다.

(빈즈영성 세무국의 2024년 6월 11일 제15463/CTBDU-TTHT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간접세 ("VAT") 지침 문서

###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전기 및 수도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 발행

회사가 정수 서비스, 폐수 처리 및 전기 공급을 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현재 회사의 공장 임차인이 정수, 폐수 처리 및 전기 구매 계약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회사와 임차인 간의 계약서에 정수, 폐수 처리 및 전기 사용 비용을 대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회사의 이름, 주소, 세금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납한 비용을 회수할 때 회사는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VAT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회사는 실제 제공된 상품의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율에 근거해야 한다.

(박장성의 2024년 6월 12일  
제4175/CTBGI-TTHT호 OL)

### VAT 면세 및 비면세 대상 서비스가 함께 포함된 인보이스 발행

회사가 고객을 위해 인프라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며, VAT 면세와 비면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각 세율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최고 세율인 10%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 구매자는 이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매입 VAT를 공제 받거나 환급 요청할 수 있다. (해당되는 경우).

(홍연성 세무국의 2024년 6월 11일  
제2363/CTHYE-TTHT호 공문)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 전화비 수당에 대한 PIT 계산기준

회사가 직원에게 전화비를 고정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해당 조건 및 지급 수준이 다음 문서 중 하나에 명시된 경우:

- 노동 계약
- 단체 협약
- 회사, 그룹, 대기업의 재정 규칙
- 이사회 의장, 총경리, 또는 회사의 재정 규칙에 따라 규정된 보상 규칙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 이 지급 수준이 CIT법에 따른 CIT 과세 소득의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이 비용이 직원의 PIT 과세 임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의 현재 규정보다 지급 수준이 높은 경우, 초과 지급된 부분은 PIT소득세 소득에 포함된다.

(하노이시 세무국의 2024년 5월 17일 제28810/CTHN-TTHT호 OL)

### 대표 사무소의 출장비에 대한 PIT 계산 기준

대표 사무소가 직원의 출장을 위해 항공권, 호텔비, 출장비 등을 지출하며, 이러한 지출이 내부 규정에 적합하고 법령에 따라 출장비로 인정되며, 2013년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d목의 지침에 따른 경우, 이 비용은 직원의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이퐁시 세무국의 2024년 5월 31일 제32969/CTHN-TTHT호 OL)

### 퇴직 수당에 대한 PIT 계산 근거

회사가 노동법에 따른 대상 및 수준에 맞게 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2013년 시행규칙 제111/2013/TT-BTC의 제2조 제2항 b항 b.6조항에 따라 근로자의 PIT 과세 임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다

회사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급여, 임금, 기타 혜택 및 수당을 근로계약 종료 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2,000,000동 이상인 경우, 회사는 2013년 시행규칙 제111/2013/TT-BTC의 제25조 제1항 1항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총 소득의 PIT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말에 급여, 임금으로 소득을 얻은 개인이 소득 지급자에게 세금 정산을 위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 시행령 제126/2020/NĐ-CP의 제8조 제6항 d.3조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무당국과 직접 세금 정산을 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5월 31일 제32970/CTHN-TTHT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 의무적인 사회보험료와 상당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 계산 근거

회사가 급여 지급 시기에 따라 의무적인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가 받는 혜택으로 간주되므로 개인의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5월 15일 -  
제/28132/CTHN-TTHT호 OL)

### 세무자문 서비스 수수료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수당에 대한 세금 계산 근거

회사가 특정 개인 또는 그룹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및 자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 비용은 2013년 8월 15일 재무부의 제 111/2013/TT-BTC 호 시행규칙의 제2조 제2항 d.7항에 따라 PIT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회사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이 소득은 2013년 8월 15일 재무부의 제111/2013/TT-BTC 호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b.6항에 따라 PIT 과세 임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5월 15일  
하노이 세무국의 제/28131/CTHN-TTHT호  
OL)

### 위임에 따라 부동산 증여에 대한 PIT 과세

부동산 증여로 인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 발생 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A씨가 위임을 통해 B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A씨와 B씨가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2013년 제65/2013/NĐ-CP호 시행령 에 제4조에 의한 규정된 세금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세무총국의2024년 6월 12일 제/2509/TCT-DNNCN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 베트남 회사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외국 공급업체와 계약할 때의 FCWT 신고 의무

외국 공급업체가 제 80/2021/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76 조, 제 77 조, 제 78 조, 제 79 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를 직접 수행한 경우, 베트남 회사는 제 103/2014/TT-BTC 호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 공급업체 대신 세금을 신고, 공제 및 납부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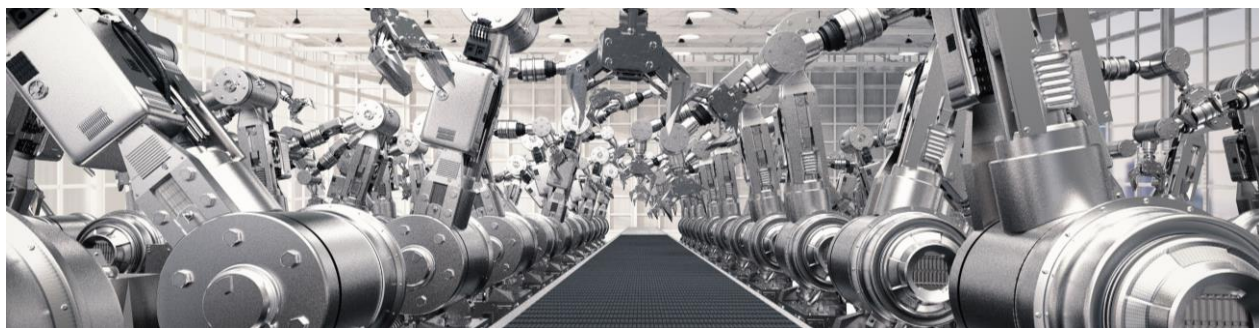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외국 공급업체가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을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총국이 외국 공급업체를 위한 전자 정보 포털 (etaxvn.gdt.gov.vn)에 세금 등록을 완료한 외국 공급업체 목록을 공개했다. 베트남 회사는 전자 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외국 공급업체의 세금 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5월 17일 제/28807/CTHN-TTHT호 OL)

###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 서비스는 FCWT 과세 대상이 아님

베트남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고객 탐색, 시장 개발, 판매 후 고객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해외 파트너에 의해 베트남 외부에서 제공되고 소비되며, 제 103/2014/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2 조 3 항 및 4 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FCWT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박장성 세무국의 2024년 5월 31일 제/3918/CTBGI-TTHT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관세 및 무역 지침 문서

### 외국 자본 투자 기업의 재고 처리활동에 대한 지침

외국 투자 기업이 기계, 장비, 임시 수입 - 재수출 품목, 고정 자산, 원자재, 부자재 등을 수입하여 수출 가공 및 생산에 사용하다가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국내 소비로 전환할 경우 (수입 직후, 생산 과정 중, 또는 생산 후), 관세총국의 제 5555/TCHQ-GSQL 호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산업공상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 외국투자 기업의 수입 재고 처리는 제 04/2007/TT-BTM 호 시행규칙에 따라 수행한다.
- 외국투자 기업의 수출 권리 및 수입 권리 수행은 제 09/2018/NĐ-CP 호 시행령에 따른다.
- 외국투자 기업의 세금 면제 수입 재고 처리에 관한 규정은 제 38/2015/TT-BTC 호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른다.

(산업공상부의 2024년 5월 28일 제396/XNK-THCS호 공문)

### EPE의 내국 기업을 위한 수출 가공 활동 에 대한 지침

관세총국의 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EPE의 내국 기업을 위한 가공활동이 수출 가공 활동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제 35/2022/NĐ-CP 호 법령 제 2 조 20항의 규정과 기업의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세금 정책과 관련하여: 내국 기업이 EPE에 의뢰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내국기업은 수입전에 수입관세와 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5월 29일 제2370/TCHQ-TXNK호 OL)

### 위험 분류 품목 목록 발행

2021년 7월 19일, 관세총국은 제2079/QĐ-TCHQ 호 결정을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수입/수출 위험 품목 분류 및 세율 적용 목록을 발행한다.
- 품목 분류 위험 목록을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행하며, 이 문서에는 품목의 이름, 신고 코드와 위험 품목 분류 목록의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 황색 및 적색 통관 절차에 대한 확인; 및
  - 통관 후 확인.

(관세총국의 2021년 7월 19일 제2079/QĐ-TCHQ호 결정)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관세 및 무역 지침 문서

### EPE의 내부 소비를 위한 공구, 기구 생산에 대한 수입 품목 확정 보고서 제출 제안

관세 총국이 재무부에 제출한 제안에 따르면, EPE가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공구 및 기구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는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에는 E11 코드, 국내에서 수입한 원자재에는 E15 코드로 신고해야 한다.

EPE는 내부 사용을 위해 공구 및 기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수입 자재 코드와 수출 제조 활동에 사용되는 공구 및 기구로 내부에서 사용되는 완제품 코드에 대해 실제 자재 명세서(BOM) 및 정산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 자재 코드의 경우, 자재 및 공급자의 입출고 잔고 정산 보고서(양식 15)를 준비할 때, 12번 칸에 “공구 및 기구 제조용”이라는 주석을 달아야 한다.
- 완제품 코드의 경우, 수입 자재로 생산된 완제품의 입출고 잔고 정산 보고서(양식 15a)를 준비할 때, 11번 칸에 “EPE 내부 사용”이라는 주석을 달아야 한다.
- 수출된 완제품의 실제 BOM을 신고할 때 (양식 16), 9번 칸에 “EPE 내부 사용”이라는 주석을 달아야 한다.

( 관 세 총 국 의 2024 년 6 월 12 일  
제2713/TCHQ-GSQL호 OL)

###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온실가스 관리 및 제거를 위한 국가 계획 발표

2024년 6월 11일, 정부 총리는 제496/QĐ-TTg호 결정을 발표하며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온실가스 관리 및 제거를 위한 국가 계획을 동봉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 화물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다음을 담당한다:

- 정부의 제06/2022/NĐ-CP호 시행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통제되는 물질이 포함된 제품, 장비 및 화물의 수출입 관리를 위한 지침을 세관 직원에게 업데이트하고 제공한다.
- 자원환경부와 협력하여 수출입 금지 품목 목록의 수정 및 보완 과정에서 조건부 수출입 품목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정부 총리의 2024년 6월 11일 제496/QĐ-TTg호 결정)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이전가격 지침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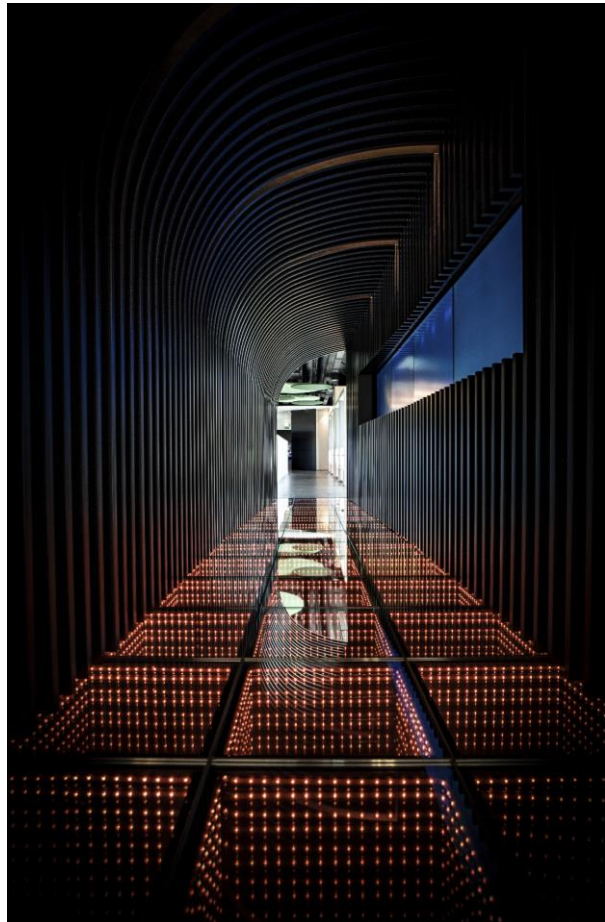
###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정책

하노이 세무국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0%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제 132/2020/NĐ-CP호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자 거래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의했다. 모회사는 대출 거래의 가격 및 이익률을 제 132/2020/NĐ-CP호 시행령 제 8조 1항에 따라 조정하여 CIT 신고를 해야 한다.

비정기적인 대출 활동을 하는 기업 (금융 기관이 아님)에서 대출자가 이자를 부과하지 않거나 시장에서 일반적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는 제 38/2019/QH14호 세무관리법 제 50조 1항에 따른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회사의 대출 이자가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즉 자본금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을 양도한 개인/조직은 제 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 2조 4항 및 제 78/2014/TT-BTC호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PIT/CIT를 납부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 제 27296/CTHN-TTHT호 공문, 2024년 5월 10일)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Contact Us



**Bui Tuan Minh**  
**National Tax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KSG 부대표**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